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진술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644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1일
발 의 자 : 정진술 의원 (1명)
찬 성 자 : 김제리, 이동현, 이병도, 김재형, 송아량, 봉양순, 강동길, 이정인, 박기재 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○ 특별시도의 차도 노면표시 관리와 포장관리가 도시교통실과 안전총괄실로 이원화된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지보수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바,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면표시 관리 업무는 도시교통실에서 안전총괄실로 이관하고, 안전총괄실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업무를 명문화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○ 안전총괄실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에 “서울특별시의 노면표시”를, 도로사업소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중 차도관리에 “버스전용차로”를 각각 추가함(별표 1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1〕

주요시설물 관리기관(제5조 관련)

구 분	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도로(차도, 보도) 및 도로시설물	서울특별시도	ㅇ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	안전총괄실장
		ㅇ 차도관리(버스전용차로, 자전거전용도로·자전거전용차로 포함) ㅇ 도로시설물(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 제외)	도로사업소장
		ㅇ 보도관리(측구,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) ㅇ 차도 및 보도의 청소(낙하물 포함)	자치구청장
	자동차 전용도로	ㅇ 차도 및 보도 관리(청소 포함) ㅇ 녹지 및 가로수	안전총괄실장
		ㅇ 도로시설물	안전총괄실장
도로부속물	공동구	ㅇ 공동구	안전총괄실장
	지하보도 및 보도육교	ㅇ 서울특별시도(자동차전용도로 포함)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(생태통로 포함)	자치구청장
	가로등·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ㅇ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·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안전총괄실장
		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도로사업소장
		ㅇ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ㅇ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자치구청장
	나머지 도로부속물(방호울타리·중앙분리대·과속방지시설·미끄럼방지시설·충격흡수시설·낙석방지망·절개지·도로 옹벽·방음벽·맨홀 등)	ㅇ 자동차전용도로(차도 및 보도)의 나머지 도로부속물	안전총괄실장
		ㅇ 서울특별시도(차도)의 나머지 도로부속물(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)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	도로사업소장
		ㅇ 서울특별시도(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)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(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·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)	자치구청장
		ㅇ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	도로사업소장
교통관리시설	지능형 교통체계	ㅇ 교통정보의 수집, 제어, 가공,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	도시교통실장
	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	ㅇ 버스전용차로(중앙 및 가로변) 유·무인 단속시스템	도시교통실장
	도로표지	ㅇ 문안검토	도시교통실장
		ㅇ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	안전총괄실장
		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	도로사업소장
		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	자치구청장
교통안전시설	신호기, 안전표지	ㅇ 지침운용,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	도시교통실장
		ㅇ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ㅇ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	안전총괄실장
		ㅇ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ㅇ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	도로사업소장

구 분	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		ㅇ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	자치구청장
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	시선유도표지·시선유도봉·갈매기표지·도로반사경·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, 교통섬 등	ㅇ 지침운용,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	도시교통실장
		ㅇ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	안전총괄실장
		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ㅇ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(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·교통섬 제외,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)	도로사업소장
		ㅇ 서울특별시도(보도)의 차량진입금지시설, 교통섬	자치구청장
하천시설	한강	ㅇ 한강의 제방, 호안, 수제, 보, 관측시설 등 ㅇ (육)갑문의 구조물,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 등	한강사업본부장
		ㅇ (육)갑문의 문짝, 권양기 시설물, 통로청소, 수문개폐	자치구청장
	국가 및 지방 하천(한강 제외) 、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	ㅇ 제방, 호안, 수제, 보, 관측시설 등 ㅇ 빗물펌프장(유수지 포함)의 구조물,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ㅇ 호안블록, 옹벽, 도수로,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ㅇ 수문의 구조물·문짝·권양기 등 관련 시설 ㅇ 갑문의 구조물·문짝·권양기·통로청소·수문개폐 등 ㅇ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·진출로 시설 ㅇ 그 밖의 하천시설	자치구청장
하수도	공공하수처리시설	ㅇ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	물재생센터소장 (위탁업체대표)
	차집관거	ㅇ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	물재생센터소장 (위탁업체대표)
	하수관거	ㅇ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	자치구청장
복개구조물	하천복개구조물	ㅇ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	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
		ㅇ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	주 기능별 설치사용자

비 고 :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

가. 청계천 제외지(堤外地)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(開口部) 수문 : 물순환안전국

나. 청계천로(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)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: 안전총괄실장

다.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

라. 〈삭 제〉

참고1) ″차도″란 보·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.

참고2) 도로부속물의 ″절개지″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
〔별표 1〕

주요시설물 관리기관(제5조 관련)

구 분	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도로(차도 · 보도) 및 도로시설물	서울특별시도	(생 략)	
		ㅇ 차도관리(자전거전용도로 · 자전거전용차로 포함) ㅇ 도로시설물(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 제외	도로사업소장
	자동차 전용도로	(생 략)	
(생 략)			
교통안전시설	신호기 · 안전표지	(생 략)	
		ㅇ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	안전총괄실장
		(생 략)	
		(생 략)	
(생 략)			

개 정 안

〔별표 1〕

주요시설물 관리기관(제5조 관련)

구 분	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도로(차도 · 보도) 및 도로시설물	서울특별시도	(현행과 같음)	
		ㅇ ----(**버스전용차로**,----------)	———
		ㅇ ----------	———
	자동차 전용도로	(현행과 같음)	
(현행과 같음)			
교통안전시설	신호기 · 안전표지	(현행과 같음)	
		ㅇ ---------- **ㅇ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**	——— ———
		(현행과 같음)	
		(현행과 같음)	
(현행과 같음)			